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6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□□□, ◈◈◈, ◆◆◆, ★★★, △△△, ◐◐◐, ■■■, ▲▲▲, ☆☆☆, ◇◇◇, ▽▽▽, ▼▼▼, ◁◁◁, ♤♤♤, ♣♣♣, ◀◀◀, ◉◉◉, ▣▣▣, ▤▤▤, ♩♩♩, ▨▨▨, ♬♬♬

2. 조치내용

□ (수사기관 통보) □□□, ◈◈◈, ◆◆◆, ★★★, △△△, ◐◐◐, ■■■, ▲▲▲, ☆☆☆, ◇◇◇, ▽▽▽, ▼▼▼, ◁◁◁, ♤♤♤, ♣♣♣, ◀◀◀

□ (과징금 부과) ◉◉◉ 3,700만원, ▣▣▣ 10만원, ▤▤▤ 980만원, ♩♩♩ 1,300만원, ▨▨▨ 3,540만원, ♬♬♬ 590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
○ ○○○○㈜ 부사장 □□□은 1차 공개매수 관련 본 건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고,

- 이를 ◈◈◈·◆◆◆·★★★에게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전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

○ 공개매수예정자인 ♠♠♠의 공개매수 업무 담당 직원 △△△는 공개매수 관련 본 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, 해당 정보를 직장동료 및 지인인 ◐◐◐ 등 *인에게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전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

○ ♠♠♠의 공개매수 업무 담당 직원 ◁◁◁은 공개매수 관련 본 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여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 계좌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

○ ♠♠♠의 공개매수 업무 담당 직원 ♤♤♤은 공개매수 관련 본 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, 이를 ♣♣♣에게 전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

○ 공개매수예정자인 ♧♧♧♧♧의 공개매수 업무 담당 직원 ◀◀◀은 공개매수 관련 본 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여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 계좌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○ □□□과 ◐◐◐은 ○○○○의 임원으로, 본인 계산으로 ○○○○ 주식을 매수·매도하는 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

□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

○ ◉◉◉ 등 6인은 공개매수 정보가 내부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점을 알면서 해당 정보를 전달받고 이용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)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2항, 제443조 제1항
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)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

□ (시장질서 교란행위)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의2 제1항, 제429조의2 제4항